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3662
----------	------

제안연월일 : 2016.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2016년 7월 13일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6년 7월 27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6. 11. 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나.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6. 11. 8)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6. 11. 10)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함(안 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

나.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2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
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② (생략)</p> <p>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p> <p>2. ~ 6.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생략)</p> <p>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p> <p>2. ~ 6.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 ----- ----- -----.</p> <p>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p>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
정받은 발명품